

춘천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51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상

변론 종결 2020. 5. 26

판결 선고 202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2. 8. 춘천시 C 전 2,5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당시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D의 딸 E의 남편인 피고에게 증여했다.

원고가 위와 같이 증여한 이유는 E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증여해 주면 매월 D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E은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12. 18.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21,000,000원인 근저당권을 F조합에 설정해주고 대출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적법한 소유자가 되었으므로, 자신의 소유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것만으로 원고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의 처 E이 D에게 월 100만 원씩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탓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E이 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에게 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엄상문